

보덕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
전략 환경영향평가
(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)

2019. 05



부산지방해양수산청



목 차

제1장 계획의 개요	1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	1
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	1
1.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	3
1.4 계획의 내용	3
1.5 계획의 기대효과	6
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	7
2.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7
2.2 대안의 설정	9
2.3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설정	11
제3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	13
3.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	13
3.2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·공고	13

제1장 계획의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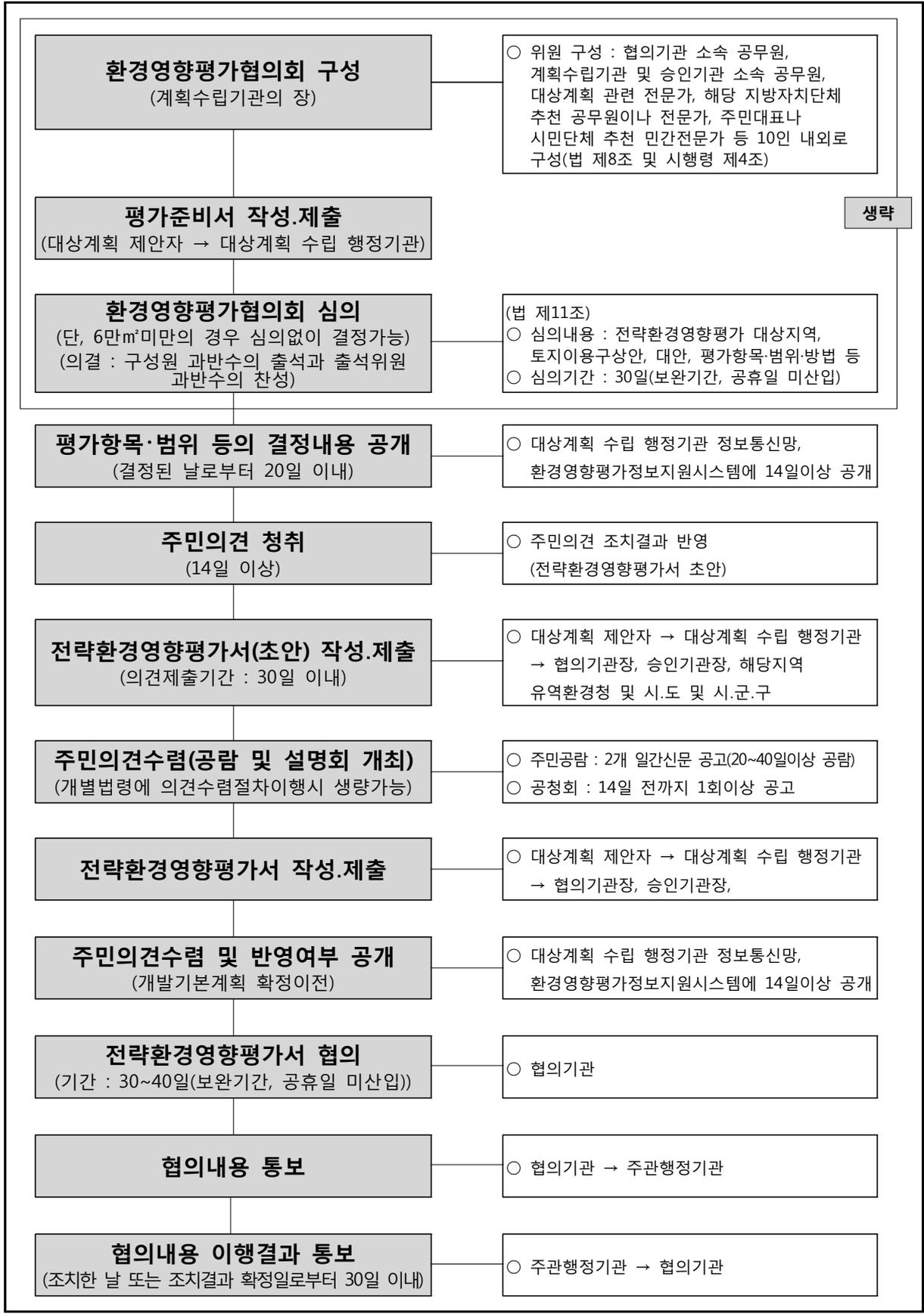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규정에 의거, 관내에 위치한 소규모 포구인 보덕포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도심 속의 오지인 보덕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,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 등 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함
- 보덕포는 수심이 얕아 선박 정박이 어렵고 오염이 심하여 포구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현재 어업권이 없어, 어민들은 대부분 장림항을 이용하고 있음
- 사하구 장림동, 신평장림산업단지 쪽의 하수가 모여 다대포 해수욕장 방향으로 흐르는 보덕포는 그동안 비가 오면 넘쳐나는 오폐수들로 여름철 다대포해수욕장 수질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
- 보덕포는 매립을 통한 편의시설로의 변화를 통해 환경적, 경관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인근 도로와 단절 되었던 현황을 개선하여 보덕포를 환경적, 창조적 공간으로 정비하여 주변 지역 환경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[별표 2]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(개발기본계획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<표 1.2-2>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

구 분	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요청시기
개발 기본 계획	차.개간· 공 유 수 면 매립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<p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8조(심의를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)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(이하 “개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. ※ 본 계획의 면적은 40772m'(매립면적 : 22,070m')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항목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음</p>			



<그림 1.2-1> 전략환경영향평가(개발기본계획) 진행절차도

1.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

가. 추진경위

- 2018. 03. : 보덕포 공유수면매립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
- 2018. 12. : 보덕포 공유수면매립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
- 2019. 03. : 보덕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

나. 추진계획

- 2019. 06 ~ 07.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
- 2019. 08.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

1.4 계획의 내용

- 계획명 : 보덕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
- 위 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915-1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원
- 계획 면적 : 40,772m²
- 매립 면적 : 22,070m²
- 계획년도 : 2019년
- 목표연도 : 2023년
- 사업시행자 : 부산광역시 사하구청
- 승인기관 : 해양수산부

<표 1.3-1> 토지이용계획(안)

용 도	면 적(m ²)	구성비(%)	비 고
지식산업센터	7,151	17.6	
기숙사형 오피스텔	11,344	27.8	
자동차 정류장	5,565	13.6	
주차장	8,320	20.4	
공원	2,424	5.9	
녹지	1,203	3.0	
도로	4,765	11.7	
합 계	40,772	100.0	공유수면매립 22,070m ²



<그림 1.4-1> 위치도



<그림 1.4-2> 토지이용계획도

1.5 계획의 기대효과

- 보덕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, 인근 근로자를 위한 공공부지 확보
- 인접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간마련
-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 확보
- 수질악화 및 악취 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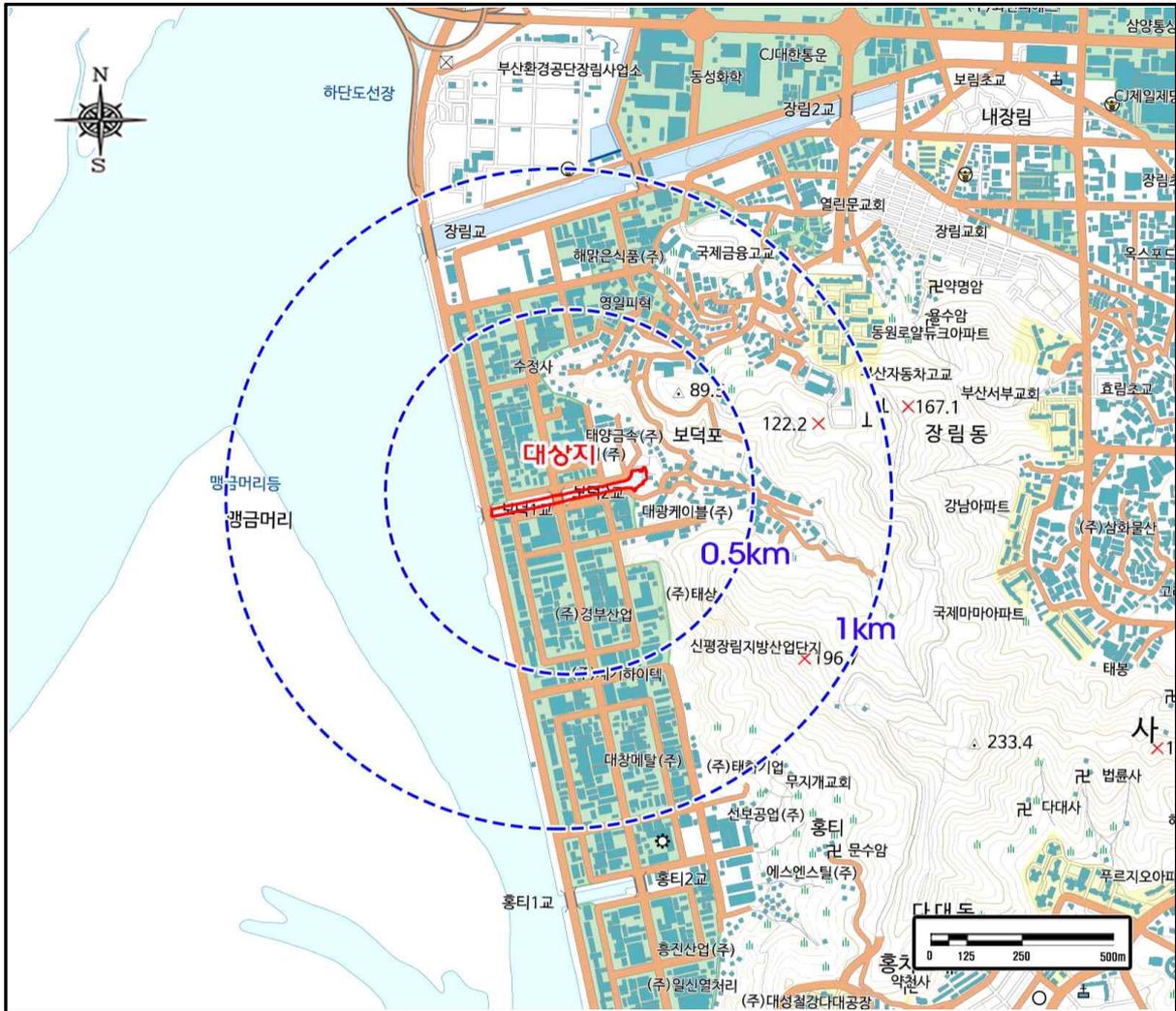
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

2.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- 계획의 시행에 따른 환경현황을 조사·분석하고, 직·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범위를 과학적인 근거하에 정량적,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획의 특성, 입지적,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.

<표 2.1-1> 주요 항목별 평가범위 설정

구 분	세부평가항목	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	평가대상지역		비 고
			공간적	시간적	
자연환경의 보전	생물 다양성· 서식지 보전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·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○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	공사 시	경계로부터 1km 이내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○ 토공사로 인한 지형형상 및 지질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○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	공사 시	계획지역 및 주변지역
	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○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	운영 시	경계로부터 2km 이내
	수환경의 보전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해양	○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	공사 시 운영 시	계획지역 및 주변지역
생활환경의 안정성	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	○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	○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	공사 시 운영 시	경계로부터 0.5km 이내
	소음·진동 기준과의 부합성	○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·진동 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지역	○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	공사 시 운영 시	경계로부터 0.5km 이내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○ 공사시 발생하는 지장물 및 건설폐기물, 분뇨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○ 운영시 생활폐기물, 사업장 폐기물 등의 발생으로 인 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○ 계획지역	공사 시 운영 시	계획지역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	○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	운영 시	계획지역



<그림 2.1-1> 대상지역 설정도

2.2 대안의 설정

가. 대안의 설정

- 본 보덕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(개발기본계획)에 대하여 계획의 비교(No Action), 입지에 따른 대안을 각각 설정하여 비교·평가함

<표 2.2-1>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

대안의 종류	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
계획의 비교	•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
수단·방법	•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
수요·공급	• 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
입지	•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
시기·순서	•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(예 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
기타	•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

나. 대안의 비교

-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를 대안 1로 선정하고, 입지에 따른 대안으로 내부 입지 시설 및 배치 등을 고려하여 대안2, 3, 4를 선정하였다.
-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인 대안 1의 경우 관리가 되지않은 상태의 포구로 수질오염 및 악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 불량한 포구 경관이 지속되며, 주차난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<표 2.2-1> 대안별 비교

구분	NO Action	Action		
	대안 1	대안 2	대안 3	대안 4
토지이용계획	-			
계획방향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덕포 공유수면 전체 매립 ○ 기존 녹지축과 가로망 유지 ○ 주차장과 기숙사형 오피스텔은 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덕포 공유수면 전체 매립 ○ 주차장, 공원 및 기숙사형 오피스텔 확충 ○ 주차장은 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덕포 공유수면 전체매립 ○ 공원, 주차장, 도록, 자동차정류장 등 공공시설을 계획 ○ 자동차정류장은 근로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중간에 계획
선정				◎
선정사유	○ 환경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단절된 도로망 연결 및 주차장 및 자동차 정류장이 조성되고 공공시설 위주의 배치가 이루어진 대안 4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			

다. 최적안 선정

- 현재 보덕포는 악취 및 수질악화 등의 부정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고, 매립지에는 공원, 주차장 및 자동차 정류장 조성이 포함된 공공시설 위주의 배치가 이루어져 공익시설이 극대화된 계획인 대안 4를 최적안으로 선정하였다.

2.3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설정

가. 평가항목 설정

- 본 계획에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[별표1]에 준하여 선정함.

<표 2.3-1>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

구 분	항목	세부평가항목	관련항목
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	-
	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	-
입지의 타당성	자연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동·식물상
	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지형·지질
	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
		수환경의 보전	해양환경 (해양수질 포함)
	생활환경의 안정성	환경기준 부합성	기상, 대기질, 온실가스, 소음·진동
	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-
	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친환경적 자원순환
	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토지이용

나. 평가방법 설정

- 본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예측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된 예측 및 분석기법, 관련 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.

<표 2.3-2> 항목별 예측·분석기법 및 관련자료

구 분	세부평가항목	예측·분석기법 및 내용	관련자료	비 고
자연 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 서식지 보전	○ 계획 내용 분석하여 동·식물상의 변화정도를 예측	○ 현지조사 자료 ○ 계획 관련 자료 ○ 문헌자료	동·식물상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○ 토공사에 따른 지형변화발생	○ 계획 관련 자료 ○ 문헌자료	지형·지질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예측	○ 현지조사 자료 ○ 계획 관련 자료	경관
	수환경의 보전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부유사확산	○ 계획 관련 자료	해양환경
생활 환경의 안정성	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	○ 계획지구의 대기질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시 공사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예측 ○ 온실가스 현황 및 발생량 예측	○ 대기질 측정 자료 ○ 현지조사 자료 ○ 건설표준품셈	대기질 온실가스
	소음·진동 기준과의 부합성	○ 합성소음 산출식, 짐음원 거리 감쇠식을 이용하여 공사시 투입 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·진동 영향을 예측	○ 현지조사 자료 ○ 계획 관련 자료	소음·진동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○ 공사시 원단위, 문헌자료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 등 발생량 예측	○ 문헌자료 ○ 현지조사 자료 ○ 계획 관련 자료	친환경적 자원순환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	○ 문헌 및 계획 관련 자료	토지이용

제3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

3.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

-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,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함

- ① 공개장소 : 부산지방해양수산청 (<http://www.portbusan.go.kr/>)
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(<http://www.eiass.go.kr/>),
- ② 공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

3.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·공고

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, 20일 이상 40일 이내에서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- 또한,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요약문 및 원문을 게시할 계획임
-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토록 할 계획이며, 공람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

가. 주민의견 수렴계획

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 후 7일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, 주민설명회 일시, 장소 등은 공람·공고 시 함께 공고할 계획임
- 공청회는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조건에 해당될 경우 개최할 계획임

- ①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
- ②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,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